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기대 의원(찬성자 13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126 호

다. 발의일자 : 2016. 4. 18.

라. 회부일자 : 2016. 4. 20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횡단보도 쉼터를 도로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‘횡단보도 쉼터’를 추가함.(안 제2조제5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횡단보도 쉼터((그림 1) 참조)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추가하여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.



[그림 1] 횡단보도 쉼터¹⁾

- 현재 ‘쉼터’는 주로 버스정류장에 적용((그림 2) 참조)되어 버스 탑승을 대기하는 시민에게 비, 바람 또는 햇빛으로부터 피신할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행 버스, 노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
1) 현재 금천구에서 보도 1곳에 시범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음(금천구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시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음).



[그림 2] 버스정류장 쉼터

- 같은 맥락에서 본 개정안 역시 도로 횡단을 대기하는 시민에게 상기와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‘횡단보도 쉼터’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 설치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에게 버스정류장 쉼터처럼 잠시의 쉼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신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음.
- 그러나 ‘횡단보도 쉼터’의 경우, ‘버스정류장 쉼터’와는 다르게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들의 동선 상에 위치하게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쉼터가 보도폭을 잠식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, 특히,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도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.
- 또한, 상대적으로 장시간이고 불규칙한 버스 대기시간에 비해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은 통상적으로 2분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, 편의제공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- 더욱이 서울시는 2014년 말 ‘인도10계명2)’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도상 신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,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12호에서도 도로점용허가대상을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 및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동 ‘횡단보도 쉼터’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시야를 제한함에 따라 사고유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「도로법 시행령」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(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

- 한편, 횡단보도 쉼터의 벽면 등에 무분별한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질 경우 도시미관에 미칠 영향

2) 인도10계명

- ① 비우기 : 시대변화에 따라 이용률 낮은 공중전화부스, 우체통 등 단계적 철거
- ② 모으기 : 신호등+가로등+교통·시설안내 표지판+CCTV 한 기둥에 통합
- ③ 낮추기 : 횡단보도 및 환기구 턱 낮춤, 가로수 뿌리 용기 정비, 한전지상기기 지중화
- ④ 보호하기 : 인도 위 불법주정차 근절 ‘포켓주차장’ 5개 노선 시범 조성 후 확대
- ⑤ 옮기기 : 가로수, 소화전, 분전함 등 보행불편 시설물 적정 위치로
- ⑥ 바로잡기 : 입간판, 상품 적치 등 불법 광고·적치물 지역 상인과 함께 정비
- ⑦ 깨끗이 하기 : 25개구 도로관리부서로 전담 지정, 세척, 도색, 파손 정비
- ⑧ 예쁘게 하기 : 이전·철거 어려울땐 외관디자인 보완, 폭 넓은 곳 정원 조성
- ⑨ 체계화 : 자치구 점용허가 시 보행 지장 여부, 디자인 등 통합 관리
- ⑩ 함께하기 : 총22개 기관 지속적인 민관 협력+600여명 거리모니터링단

도 감안해야 할 것임.
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는 지난 2015.10.8일 제10조제1항제2호³⁾가 개정되면서 ‘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’ 대상에 ‘횡단보도 쉼터’가 추가되었는데, 이는 본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라 하겠음.
- 결론적으로, 본 개정안이 횡단보도 쉼터를 통해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에게 잠시의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,
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현 정책기조, 보행환경에 미칠 영향, 도시미관, 사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됨.

3) 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1. 휴지통, 벤치
2. 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쉼터
- 3.~5. (생략)
- ②~③ (생략)